

학생상담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예원예술대학교 부속 학생상담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라 부른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제반 문제를 연구, 분석하고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폭넓은 자기 이해와 보다 건전한 대학생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생활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본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2장 사업

제3조(사업) 이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상담지도를 위한 연구 활동
2. 생활지도
3. 개인지도
4. 집단지도

제4조(직무) 이 센터는 다음 사항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상담지도 및 연구 활동
2.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
가. 상담교수로부터 제출된 면담내용의 결과를 분석, 검토하여 학생지도 대책수립
나. 학생지도에 관한 학생생활연구지를 발간하고,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각종 검사 실시

제5조(임원) 이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센터장 1명
2. 위원 7명 이내
3. 간사 1명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를 총괄한다.

제7조(위원) ①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.

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8조(간사) ① 간사는 본교 입학지원팀장이 된다. <개정 2021.1.21.><개정 2021.7.22.>

②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9조(위원회) ① 이 센터에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의 운영, 정책, 사업계획, 예산 및 기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, 결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센터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구성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재정

제10조(재정) 이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교비로 충당한다.

제11조(예산 및 사업계획) 센터장은 연구소의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매학기 초에 입학홍보처를 경유하여 기획조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9.25.><개정 2021.7.22.>

제12조(결산 및 사업보고)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매학기 말에 입학홍보처를 경유하여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부 칙(2002. 5. 15)

1. 본 규정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0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2. (명칭 변경) 직제변경에 따라 학생생활상담연구소를 학생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.

부 칙(2021. 1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